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489 호

1975. 3. 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- 제 932 호 :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
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..... 3
- 제 933 호 : 서울특별시와 과속면세에 관한 특별조례 폐지조례..... 3
- 제 934 호 :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
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..... 4
- 제 935 호 : 서울특별시 공한지 신고에 따른 재산세 불균일과세
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

◎ 고 시

- 제 33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..... 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1975. 3. 7.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32 호

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"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직급조치 제16조 제1항 및 을 삭제하고, 동조 제1호중 "1,000분의 2"를 "1,000분의 3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제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1975. 3. 7.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33 호

서울특별시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제지조례

서울특별시조례제 749 호 (73.3.3)

서울특별시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
1975. 3. 7.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34 호

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
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
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증 다
은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"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
대통령 긴급조치 (이하 "긴급조치"라
한다) 제 16 조 제 1 항 규정에 불
구하고"를 삭제한다.

제 2 조 제 2 호 중 "긴급조치 제 16 조
제 1 항 제 1 호"를 "지방세법
제 188 조 제 1 항 제 1 호"로 한다.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(세율) 전조의 건물 및 토지
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88 조의
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세율
을 적용한다.

- 1. 토지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- 2. 가옥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공한지신고에 따른 재산세 불균일 과
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춘 인

1975. 3. 7.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35 호

서울특별시공한지신고에따른재산
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

서울특별시조례제 824 호 (74.3.23)

서울특별시 공한지 신고에 따른 재
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
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3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일부변경및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

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(출장소)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5. 3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로선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가정	소로	3		6 ^m	132 ^m	제기동149-4앞	제기동174-5앞	지적분할및개설경 도로에마주어변경
변경	"	3		6	132	"	"	"
가정	"	3		6	228	장위동208-1	장위동173-14	지적분할및개설경 도로에마주어변경
변경	"	3		6	228	"	"	"
가정	"	2		8	90	시흥동263	시흥동262-5	위치일부변경
변경	"	11		8	82	"	"	"
가정	"	1		10	120	가리봉동107-5	가리봉동115-45	위치일부변경
변경	"	1		10	120	"	"	"
가정	"	3		6	90	신대방동552-1	신대방동554-3	위치일부변경
변경	"	3		6	90	"	"	"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(출장소)에 보관함.